

2026년 미국의 최신 관세부와 현황표*

구분	원산지	트럼프 2기 추가 관세						기존 적용 관세 ²⁾				
		제232조 품목별 관세			IEEPA 국가별 관세		관세부과율	부과 구조	통상법 ³⁾ 제301조	기본관세 ⁴⁾ FTA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자동차·자동차부품 ¹⁾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상품	목재 및 파생상품	마약·이민	상호관세						
자동차·자동차 부품	한국·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25~100% (전기차)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25%			10%		35%					
	베트남	25%					25%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① 완성차 조건: 상무부 승인 대상: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① 완성차 비미국산 부품만 25% ② 자동차 부품 0%
		USMCA 미총족	25%				25%					
철강·알루미늄	한국·EU·일본·베트남		50%(철) 50%(알)				50%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함량(50%)+펜타닐(10%)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50%
		USMCA 미총족										
철강·알루미늄·반가공 구리 파생상품	한국·EU·일본		50%(철) 50%(알) 50%(구)			15%	~50% (중국 펜타닐 10% 추가)	품목별 관세 (함량 가치) + 국가별 관세 (비함량 가치)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10%						
	베트남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캐나다 35%						
		USMCA 미총족				멕시코 25%						
목재 및 파생상품	한국·EU·일본			15%			15%	품목별 관세 +	25%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25%	10%		(10~25%) +10%					
	베트남						10~25%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10~25% ⁵⁾							
USMCA 미총족												
그 외 제품	한국·EU·일본					15%	15%	국가별 관세 +	25% or 50%	기본세율 또는 FTA세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중국				10%	10%	20%					
	베트남					20%	20%					
	캐나다·멕시코	USMCA 총족					0%					0%
		USMCA 미총족				캐나다 35%						캐나다 35% (에너지 10%, 칼륨 10%)
					멕시코 25%		멕시코 25% (칼륨 10%)					

* 기발표 내용을 기초로 변경된 상호관세율 반영(작성일자: 2026.01.05.)

- 1) 한국은 EU·일본과 동일한 15%로 합의(MFN 포함, 2025년 11월 1일부터 적용)
- 2) 반덤핑·상계관세와 기본관세/FTA는 중복 부과 되지 않음. 단, 301조와 기본관세/FTA는 중복 부과 가능
- 3) 미국은 '통상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중국산 물품에 대해 25%에서 10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적용 대상: 배터리와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25%), 광물 자원(25%), 영구자석(25%), 반도체(50%), 태양전지(50%), 전기차(100%) 등
- 4) 한국·EU·일본은 MFN 15%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구분	2025.10.14.~	2027.01.01.~	비고	
연목	10%	10%	무역협정 완료국가 영국: 10% 한국·EU·일본: 15% (한국은 2025년 11월 14일부터 적용)	
가구	목재가구	25%		30%
주방 캐비닛, 세면대	25%	50%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 해당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 품목별 관세에 IEEPA 국가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관세 구조가 이중화돼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적용 중
 - (구조) 기존 관세 체계에 ① 제232조 품목별 관세와 ② IEEPA 상호관세가 더해지는 구조
 - (예시) 냉장고는 철강 파생상품 대상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08.18)
- ① 제232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② IEEPA 국가별 관세 = (한국산)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 ∴ 총 관세 = (①+②) + 기존 관세(MFN or FTA 등)

원산지(국가)별 파생상품 관세의 차등 부과

- 이중 구조를 지닌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는 원산지(국가)별로 차등 적용 중이며, 한국산은 USMCA를 충족한 물품 외에 가장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음

원산지		관세부과율	
1	USMCA 기준 충족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만 부과	
2	한국산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15%	
3	USMCA 기준 미충족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	[캐]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35%
			[멕]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25%
4	중국산	함량 관세 50% + 비함량 관세 10% + 마약 관세 10%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 대상으로 확대된 품목의 관세부과 예시

<한국산 냉장고의 對美 수출 체크리스트(예시)>

No.	항목	체크 내용 예시		
1	관세부과 동향	철강 파생상품에 이어 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 확대(08.18) - 대상 물품의 부과 항목 확인(함량 관세, 비함량 관세)		
		제232조 철강 파생상품	제232조 알루미늄 파생상품	상호관세
		대상	대상	대상
		함량 가치의 50%	함량 가치의 50%	비함량 가치의 15%
2	품목분류	일체형 냉장고의 품목분류는 HTSUS 8418.10.00		
3	원자재 함유량과 제조지 확인	자사 물품의 철강 함유량은 40%, 알루미늄 함유량은 20%, 기타 40%		
4	원산지 확인	美 CBP 원산지사전심사 제도를 통한 원산지(한국) 확인		
5	관세율 확인과 총 관세 계산	상품 총가치: 1,000\$		
		구분	관세부과(가격기준)	
		철강 함량	400\$ × 50% = 200\$	
		알루미늄 함량	200\$ × 50% = 100\$	
		비함량	400\$ × 15% = 60\$	
		기존 관세	MFN or FTA 등	
총 관세	360\$ + 기존 관세액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현황¹⁾

연번	국가	관세율(%)		
		종전	현행	
1	아프가니스탄	10	15	
2	알제리	30	30	
3	앙골라	32	15	
4	방글라데시	35	20	
5	볼리비아	10	15	
6	보스니아헤르체코비아	30	30	
7	보츠와나	37	15	
8	브라질 ³⁾	50	10	
9	브루나이	25	25	
10	캄보디아	36	19	
11	카메룬	11	15	
12	차드	13	15	
13	코스타리카	10	15	
14	코트디부아르	21	15	
15	콩고민주공화국	11	15	
16	에콰도르	10	15	
17	적도기니	13	15	
18	EU	30	MFN 15% 이상 품목	MFN 적용
			MFN 15% 미만 품목	15%(MFN 포함)
19	포클랜드 제도	41	10	
20	피지	32	15	
21	가나	10	15	
22	가이아나	38	15	
23	아이슬란드	10	15	
24	인도 ⁴⁾	26	25	
25	인도네시아	19	19	
26	이라크	30	35	
27	이스라엘	17	15	
28	일본	25	15	
29	요르단	20	15	
30	카자흐스탄	25	25	
31	라오스	40	40	
32	레소토	50	15	
33	리비아	30	30	
34	리히텐슈타인	37	15	
35	마다가스카르	47	15	
36	말라위	17	15	
37	말레이시아	24	19	
38	모리셔스	40	15	
39	몰도바	25	25	
40	모잠비크	16	15	
41	미얀마	40	40	
42	나미비아	21	15	
43	나우루	30	15	
44	뉴질랜드	10	15	
45	니카라과	18	18	
46	나이지리아	14	15	
47	북마케도니아	33	15	
48	노르웨이	15	15	
49	파키스탄	29	19	
50	파푸아뉴기니	10	15	
51	필리핀	20	19	
52	세르비아	35	35	
53	남아프리카공화국	30	30	
54	대한민국	25	15	
55	스리랑카	30	20	
56	스위스	31	39	
57	시리아	41	41	
58	대만	32	20	
59	태국	36	19	
60	트리나드 토바고	10	15	
61	튀니지	25	25	
62	튀르키예	10	15	
63	우간다	10	15	
64	영국	10	10	
65	바누아투	22	15	
66	베네수엘라	15	15	
67	베트남	40	20	
68	잠비아	17	15	
69	짐바브웨	18	15	

1) 본 현황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발표(행정명령 제14236호)에 기반해 전 세계 부과 현황이 작성되었음

2) 트럼프 2기 행정부 공식 서한에 따른 관세율(07.07~07.09)

3) 브라질은 상호관세 10%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3호에 따라 40%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4) 인도는 상호관세 25% 외 별도 행정명령 제14329호에 따라 25%가 추가되어 총 50% 부과

1. '트럼프 관세' 개요

☑ 배경

- 지속적인 무역적자로 인한 국가 경제 안보의 위협 해소

☑ 목적

- 무역적자 시정, 중국산 우회 수출 차단, 해외 투자 유입 촉진, 미국 제조 산업 보호를 통한 미국 중심 보호주의 통상질서 확립

☑ 추가 관세 종류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른 국가별 관세

법적 근거	대상		발표형태	일자	비고	
IEEPA	마약·이민	캐나다	행정명령 제14193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對캐나다 25%, 에너지 10%	
			행정명령 제14231호	03.06	칼륨 10%	
			행정명령 제14325호	07.31	USMCA 미충족 35%	
		멕시코	행정명령 제14194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對멕시코 25%	
			행정명령 제14232호	03.06	칼륨 10%	
		중국	행정명령 제14195호	02.01	마약 유입 차단, 對중국 10%	
	행정명령 제14228호		03.03	마약(펜타닐) 관세 20%		
	행정명령 제14357호		11.04	마약(펜타닐) 관세 10%		
	국가별 관세 (상호관세)			행정명령 제14257호	04.02	對세계 10%, 對중국 34%,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EU 20% 등)
				행정명령 제14259호(중국)	04.08	對중국 34% → 84%
				행정명령 제14266호(중국)	04.09	對중국 84% → 125%
				행정명령 제14298호(중국)	05.12	對중국 125% → 10% (+24% 유예)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	상호관세율 최종 수정 (對한국 25% → 15%)
				행정명령 제14334호(중국)	08.11	對중국 관세 유예 기존 10%(+24%) 유지
				행정명령 제14358호(중국)	11.04	對중국 관세 인상 중단 기본관세 10%만 부과
	무역확장법 제232조	자동차·자동차 부품		포고령 제10908호	03.26	對세계 25%, (USMCA 충족 시 비미국산만 25%)
철강·철강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6호		02.10	對세계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對세계 25% → 50%	
알루미늄·알루미늄 파생상품		포고령 제10895호		02.10	對세계 25%	
		포고령 제10947호		06.03	對세계 25% → 50%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62호	07.30	對세계 50%		
목재 및 파생상품		포고령 제10946호	09.29	對세계 10~25% (영국 10%, EU·일본 15%)		

☑ 환적(Transshipment) 차단 조항 신설 (행정명령 14325호, 07.31)

- 환적을 통한 관세 회피 행위 적발 시, 기본관세에 40% 추가 관세부과
- 그 외 법에 따른 징벌적 벌금, 세금 및 기타 부과금 모두 적용(감경 또는 면제 불가)
- 6개월마다 우회 수출 의심 국가 및 시설 리스트 발표(정부 조달, 안보 및 상업 심사 등 반영)
- 현재 환적(Transshipment)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대한 공식 발표 전(미국측 자의적 해석 가능)

환적(Transshipment)_CBP 홈페이지

- 원산지 상품은 NAFTA 역외에서 하역, 재적재, 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 또는 캐나다·멕시코·미국으로 운송하는데 필요한 작업 외의 공정 수행 시 원산지 지위를 상실한다.

예시 의료용 세트 물품

- 미국산 소재를 사용하여 만든 수술 도구와 멕시코산 면 가운과 붕대가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송되어 살균 및 포장 공정을 수행
- CBP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멸균 및 포장' 공정이 수행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판단

☑ 최신 조치 주요내용

- ☑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행정명령 14326호, CBP 지침 CSMS #65829726_(08.07)}
 - 총 69개 경제주체 대상 국가별 관세부과(부속서 I, 한국, 일본, EU 등 포함)
 - 부속서 I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는 행정명령 14257호에 따른 10% 관세부과
- ☑ 자동차 부품 관세 상쇄 지침 발표(CBP CSMS #66684128, 10.31)
 - (수입자 신청) 상무부의 수입 조정 상쇄 혜택을 부여받은 수입자만 신청 가능
 - (제232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된 부분만 상계가능
- ☑ 한-미 무역협상 결과 발표(CSMS #66987366, 12.03)
 - (자동차·부품) EU, 일본과 동일한 수준인 15%로 합의(MFN 포함), 11월 1일부터 적용
 - (목재·파생상품) MFN 포함 15%로 합의, 11월 14일부터 적용
 - (의약품) 15% 이하로 적용
 -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
 - (상호관세)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적용
- ☑ 상호관세 범위 수정{행정명령 14360호, 14361호}
 - 특정 농산물(기타 감귤류, 열대 과일 등)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CSMS #66814923, 11.14)
 -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기타 감귤류, 열대 과일 등)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CSMS #66871909, 11.20)

2. 제232조 품목별 추가 관세 근거 규정 및 지침

- ✓ 자동차·자동차 부품: 대통령 포고령 제10925호에 따른 품목
 - (자동차) CBP 지침 CSMS #64624801_(04.02)
 - (자동차 부품) CBP 지침 CSMS #64916652_(05.01)
 - (USMCA) CBP 지침 CSMS #65649652_(07.16)

- ✓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제10947호에 따른 품목
 - (철강 및 철강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374_(06.03)
 - (철강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570_(08.15)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236645_(06.03)
 - (알루미늄 파생상품) 품목 확대 적용 CBP 지침 CSMS #65936615_(08.15)

- ✓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품목
 - (구리 및 구리 파생상품) CBP 지침 CSMS #65794272_(07.31)

- ✓ 목재 및 파생상품: 대통령 포고령 제10976호에 따른 품목
 - (연목, 실내 장식, 주방 캐비닛) CBP 지침 CSMS #66492057_(10.10)

- ✓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대통령 포고령 제10984호에 따른 품목
 - (중대형 차량 및 부품) CBP 지침 CSMS #66665333_(10.29)

- ✓ 그 외 제품
 - (캐나다) 에너지 자원, CBP 지침 CSMS #64297449_(03.03)
 - (캐나다)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6037_(03.06)
 - (멕시코) 칼륨(Potash), CBP 지침 CSMS #64335789_(03.06)

3. IEEPA에 따른 상호관세 추가 여부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자동차 부품 관세부과 시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철강 가치에 대한 함량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가치에 대한 함량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동 법(제232조)에 따른 구리 가치에 대한 함량 관세와 상호관세는 모두 제외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시

- 철강과 알루미늄은 함량 가치에 따른 중복부과 가능하며, 상호관세는 제외
- 단, 파생상품의 경우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제품 구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함량 가치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및 비함량 가치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부과 시

- 연목, 실내 장식 기구, 주방 캐비닛과 세면대 등 대상 품목은 상호관세 제외
- 그 외 목재 및 파생상품은 상호관세 부과

✔ 그 외 제품

- (TIP) 보세 임시 수입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신고된 상품은 제외
- (USMCA) USMCA 기준 충족 시 제외, 미충족 시 부과
- (캐나다) USMCA 기준 미충족 에너지 자원(10%), 칼륨(10%) 부과
- (멕시코) USMCA 기준 미충족 칼륨(10%) 부과

✔ 對중국 상호관세 현황

- 행정명령 제14298호(05.12)에 따라 국가별 10%(+24% 유예중)+마약·이민 관세 20% 유지
- 행정명령 제14334호(08.11)에 따라 11월 10일까지 현행 유지(총 54% 중, 24% 유예)
- 행정명령 제14357호(11.04)에 따라 펜타닐 관세 10%로 인하
- 행정명령 제14358호(11.04)에 따라 관세 인상(+24%) 중단, 기본관세 10%만 부과

4. '트럼프 관세' 시사점

✓ IEEPA에 따른 추가 관세 변동 가능성

- 미국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 논란으로 위헌 소송 진행 중
- 8월 29일, 美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에 근거한 관세정책은 위법하다고 판결함
-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 11월 5일, 美 연방대법원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의 합법성에 대한 구두 변론 진행
- 美 연방대법원의 공식 판결 선고일은 확정되지 않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IEEPA를 대체할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있음

✓ 행정명령 제14326호 (07.31)의 제6조

- IEEPA에 따른 관세부과 관련 소송 패소 시의 대비책으로 보여짐
- (신설 조항) Sec 6. Severability(분리 가능성)

(원문)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 (국문) 본 명령의 특정 조항이나 그 적용이 어떤 개인이나 상황에 대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본 명령의 다른 조항이나 그 적용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합니다.
- 해당 조항(Severability)은 이전 상호관세 관련 발표(07.07)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에 대한 안정성 제고를 위해 삽입한 것으로 해석 가능

<트럼프 2기 행정부> 미국 관세부와 현황 일지



1월

20일	- 트럼프 대통령 취임 - 2월 1일부터 멕시코·캐나다 대상 25% 관세 예고 - 중국에 대한 관세부와 방안 검토 언급
-----	--



2월

1일	- 불법 이민자·펜타닐 등 마약 유입을 이유로 캐나다·멕시코 대상 25% 관세부와 행정명령 서명 - 중국 대상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
3일	- 멕시코·캐나다 대상 관세 30일간 유예 발표
4일	- 중국에 대한 IEEPA 마약·이민 관세 10% 추가 발효
10일	- 3월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 예고
13일	- 상호관세 부과 예고
26일	- EU에 대한 25% 관세 발표 예고



3월

4일	-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발효(캐나다 에너지 관련 품목 10%) - 중국 대상 20% 관세 적용(기존 10% + 마약·이민 IEEPA 10%)
5일	- 멕시코·캐나다산 자동차 관세 1개월 면제 발표
6일	- USMCA 기준 총족 품목에 대해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 관세 면제 - USMCA 기준 미총족 캐나다산 에너지 10%, 칼륨 10% 관세부와 - USMCA 기준 미총족 멕시코산 칼륨 10% 관세
9일	- 중국, 미국산 농·축산물 대상 '2차 보복관세' 부과
12일	- 전 세계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제232조) 발효
14일	- 캐나다, 미국산 철강·알루미늄 등에 298억 캐나다달러 규모 보복관세 부과 - WTO 분쟁 협의 요청
24일	-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산 석유 수입국에 25% 관세부와 발표
26일	- 4월 3일부터 제232조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4월

1일	- 제232조 근거로 반도체·제조 장비 및 의약품·원료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개시
2일	-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4월 5일부터) 발표 - 국가별 추가관세(4월 9일부터) '상호관세' 계획 발표, '해방의 날' 명명 - 국가별 관세 발표: 한국 25%,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 비미국산 부분(Contents)만 25% 적용, 미국산 부품 함량이 20% 미만인 경우 전체 가치에 대해 관세부와
3일	- 제232조 근거로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부와
4일	- 제232조 근거로 알루미늄 파생상품 25% 관세부와 - 러시아산 알루미늄 제품에 200% 고율관세 적용 - 중국, 4월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예고
5일	- 전 세계 대상 10% 관세 발효
8일	- 중국 보복관세 대응 차원에서 대중국 관세 84%로 수정, 마약 관세 포함 누적 104% 관세 부과
9일	- 중국, 대미 관세 84%로 인상 - 트럼프 대통령, 중국 제외 국가 대상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7월 9일까지) - 대중국 관세 125%로 수정, 마약 관세 포함 누적 관세 145%
12일	- 스마트폰·컴퓨터·반도체 제조장비 등 상호관세 대상에서 제외
15일	- 제232조 근거로 중요 광물 및 파생상품 수입의 안보 영향 조사 착수
29일	- 제232조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 수입 조정 제도 도입 - 관세 상쇄금 등 중복 부과 조정



5월

2일	- 중국·홍콩 소액 면세 기준 폐지
4일	- 해외 제작 영화에 100% 관세부와 방침 발표
9일	- 미·영 무역합의 발표 - 미국: 영국산 자동차 10만 대까지 25% → 10%로 인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폐지 - 영국: 미국산 농산물 등 시장 개방 수용
10-11일	- 미·중 제네바 고위급 회담 개최
12일	- 미·중, 상호관세 대폭 인하 합의(90일간 유효) - 대중 관세: 145% → 30% - 대미 관세: 125% → 10%
14일	- 중국발 800달러 미만 소포 관세 120% → 54%로 인하
23일	- 트럼프 대통령, 6월 1일부터 EU 대상 50% 관세부와 예고 - 애플에 최소 25% 관세부와 예고, 아이폰 미국 내 생산 촉구
25일	- EU 대상 50% 관세 7월 9일까지 유예 발표
28일	-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IEEPA) 시행 금지 판결
29일	- 미 연방 항소법원, 상호관세 일시 복원 명령
30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제품 관세 25% → 50% 인상 발표



6월

3일	- 트럼프 대통령,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포고문 서명
4일	- 철강·알루미늄 제품 50% 관세 발효 - 중국 대상 마약·이민 IEEPA 적용

7월

2일	- 미·베트남 무역합의 발표 - 베트남산 수입품 관세 46% → 20% 단일관세 - 환적 물품에 40% 고율 관세부과
7일	- 트럼프 대통령 공식서한 발송,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 연기 - 한국·일본 등에 관세 서한 공개,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전면 25% 관세 통보
30일	- 반가공 구리제품·구리 파생상품에 8월 1일부터 50% 관세부과 발표 - 브라질 제품에 8월 6일부터 40% 관세부과 발표 -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 대상 소액 면세 제도 중단
31일	- 캐나다 제품에 8월 1일부터 35% 관세부과 발표 - 상호관세율 수정안 발표(8월 7일 발효) - 중국은 IEEPA에 따른 마약·이민 관세 20% + 국가별 관세 10% 적용 유지

8월

6일	- 트럼프 대통령 반도체 관세부과 가능성 시사 - 인도산 제품에 관세 25% 인상 발표(러시아 석유 제재)
7일	- 한국산 물품 상호관세 15% 발효
11일	- 중국 상호관세 유예 발표(11월 10일까지)
13일	- 트럼프 대통령 전략적 활성 의약품 비축량 확보 명령
15일	- 철강·알루미늄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8월 18일부터 적용) -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에 대한 관세 50%, 비함량 부분은 국가별 관세부과 - 미국에서 제련 및 주조된 경우 0%, 영국산 25%, 러시아산 200%
18일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적용 범위 확대(407개 품목) 시행
21일	- 미국·EU 무역협정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 반도체, 의약품, 목재에 대한 관세율 15% 이하 보장 - 제232조 자동차·자동차부품 관세 관련 공동성명 발표 ① (조건) EU의 미국산 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 시행을 위한 입법안 공식 제출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29일	- 美 연방순회합소법원,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위법 판결 ① 판결 대상은 상호관세 및 마약 관세(중국, 멕시코, 캐나다) ②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 제232조 품목관세는 무역확장법에 근거하였으므로, 이번 판결의 대상이 아님 ③ 2025년 10월 13일까지 기존 조치의 효력 유지 ④ 트럼프 행정부, 대법원 상고 시사

9월

4일	- 미국·일본 협정 이행 발표(행정명령 제14345호) ① 자동차, 자동차 부품, 항공우주 제품, 의약품 및 미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품목 등에 별도의 분야별 특혜 적용 ②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③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상호관세 부과(MFN 포함)
5일	- 상호관세 범위 수정 및 무역, 안보 협정 이행 절차 수립 발표(행정명령 제14346호) ① 미국·EU 무역협정 이행 ② EU의 특정 조건(입법안 제출) 이행에 따라 제232조 품목별 관세 인하 이행 ③ 자동차·자동차 부품, 의약품 및 반도체 대상 15% 관세 부과 ④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관세는 50% 유지
29일	- 제232조 근거 목재 및 파생상품 수입 조정 발표(포고령 제10976호) ① 연목 및 목재: 10% ② 실내 장식 가구: 25%(2026.01.01. 이후 50% 예정) ③ 주방 캐비닛 및 세면대와 부품: 35%(2026.01.01. 이후 50% 예정) ④ 대영국 관세: 10% ⑤ 대EU·일본 관세: 15%(MFN 포함) ⑥ 10월 14일 적용 - 제232조 추가 품목 관세 발표 ① 반도체 ② 의약품 ③ 상업용 항공기 ④ 풍력 터빈 ⑤ 로봇 ⑥ 무인 항공 시스템 ⑦ 개인 보호 장비 등 품목에 대해 상무부 조사 진행 중

10월

3일	- 제301조 근거 중국 선박 수수료 부과 지침 발표(10월 14일 적용)
10일	- 제232조 목재 및 파생상품 관세 관련 세부 지침 발표(10월 14일 적용)
17일	- 제232조 근거 중대형 차량 및 부품, 버스에 대한 관세 발표(11월 1일 적용)
29일	- APEC 한-미 정상회담 중, 한-미 무역 협상 타결 - 중대형 차량 및 버스(MHDV)에 대한 관세부과 지침 발표 ① 완성차: 25%(버스 및 기타 차량 10%) ② USMCA 기준 충족: 비 미국산 부품 가치만 25%(일부 품목 0%) - 중대형 차량 및 버스의 부품(MHDVP)에 대한 관세부과 지침 발표 ① 부품: 25% ② USMCA 기준 충족: 0%(완성차 분해 키트나 부품 세트 제외)
30일	- 한국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 쿠알라룸푸르 협정 이행 합의(11월 10일 적용) ① 미국→중국: 상호관세 인상 중단 및 펜타닐 관세 인하, 1년간 입항 수수료 유예, 일부 대중제재 및 조사 완화 검토 ② 중국→미국: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출규제 유예, 미국산 대두, 수수, 원목 구매, 미국산 농수산물 수입 관세 유예
31일	- 美 CBP 자동차 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 상쇄 지침 발표

11월

4일	- 對중 펜타닐 관세 10% 인하(행정명령 제14357호, 11월 10일 적용) - 對중 상호관세 인상 중단 및 기본관세 10% 부과 연장(행정명령 제14358호)
13일	- 한-미 무역협상 결과 발표(백악관 팩트시트) ① 자동차·자동차 부품: 15%(MFN 포함), EU 및 일본과 동일 수준 ② 목재·목재파생상품: 15%(MFN 포함) ③ 의약품: 15% 이하로 적용 ④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내 비생산 천연자원: 0% ⑤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적용 ⑥ 상호관세: MFN 15% 이상인 품목은 MFN 적용, MFN 15% 미만인 품목은 15% 적용
14일	-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조치 - 기타 감귤류(에트로그), 열대 과일, 종교용 대추야자 가지와 베이커리, 아사이, 오렌지, 자몽 등 특정 농산물에 대한 상호관세 면제



12월

3일

- 한-미 전략 무역 및 투자 협정의 관세 관련 요소 이행 지침 발표(CSMS #66987366)

4일

- 한-미 전략 무역 및 투자 협정의 관세 관련 요소 이행 연방관보 발표(FR Doc.2025-21940)

9일

- 한-미 전략 무역 및 투자 협정의 관세 관련 요소 이행 수정 지침 발표(CSMS #67045953)